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12. 1.(목)
담당 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정재민 (02-2110-4373)
		담당자	검 사 석수민 (02-2110-3798)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 -

- 법무부는 오늘('22. 12. 1.)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1. ~ '23. 1. 10., 총 40일).

【주요 내용】

- ▲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 ▲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해지청구권)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의 매매계약은 1년)
 - ▲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사적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개정 배경

-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 동안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12개 항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 법문상 ‘디지털제품’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19. 5.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규범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회원국의 국내 「민법」 등에 입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계약 체결 시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디지털제품 구입 시 이용자가 최소한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33조의3 제1항).

※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우리 사법(私法) 형성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업데이트 조치가 제공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업데이트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33조의3 제3항).

□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 것이어서, 물건이 아닌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 등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하자시정청구권”), 이에 더하여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계약해제·해지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733조의4).

-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디지털제품의 경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안 제733조의4제3항).

□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 신설

- 개정안은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33조의6).
- 제공자는 ①계약 당시에 **변경가능성을 유보**하고, ②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③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법인 「민법」이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 주요 조문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채권) 제3편(계약)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p>
<신 설>	<p>제733조의2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p>
<신 설>	<p>제733조의3 [제공자의 의무]</p> <p>①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제품을 제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거나,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디지털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서비스의 접속 내지 이용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p>③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제1항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간 2. 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신 설>	<p>제733조의4 [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p> <p>①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 대해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p> <p>1.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기간이 종료한 때</p> <p>2. 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이 제공된 때</p> <p>3. 제73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p> <p>④ 제3항의 기간은 디지털제품 제공에 관하여 민법상 다른 전형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p>
<신 설>	<p>제733조의5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p> <p>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p> <p>② 계약 종료 후에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제공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그 외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 설>	<p>제733조의6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디지털제품의 변경] ① 디지털제품에 대한 계속적 제공계약의 경우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1. 계약 당시에 제공자의 변경가능성을 유보하였을 것</p> <p>2.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제품의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p> <p>3. 변경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할 것</p> <p>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